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					처리기	간
					7 일	
신 고 인	① 성명		② 생년월일			
	③ 주소		④ 전화번호			
주차장치	⑤ 설치장소		⑥ 사용검사일			
	⑦ 주차대수	대, m²	⑧ 종류 및 방식			
철거계획	⑨ 시설물 또는	대, m²	⑩ 인근 설치		대,	m²
	부지 안		① 설치 면제		대	
	① 철거 사유					
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수수료

1.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 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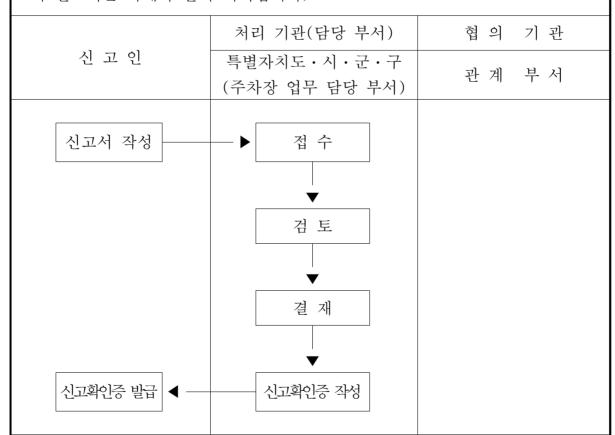
없 음

- 2.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
- 3.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 장 인근설치계획서)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)

※ 작성 시 주의사항

-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⑦·⑨·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습니다.
-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고 제 호
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[인]